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11	정부	2024.10.16.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206238	장철민의원	2024.12. 5.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22.)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⑤ (생략)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u> <u>· 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u> <u>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u> <u>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u> <u>야 한다.</u>
⑦ (생략)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 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u>조사할 수 있다.</u>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 ----- ----- ----- <u>성</u> <u>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u> <u>한다.</u>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u>1개월</u>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 ----- <u>3개월</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